

서울특별시의회
제326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9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 경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그동안 서울특별시 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

조례 상, 위탁 등의 별도 조항이 부재하여

경쟁입찰 등을 통해 공모사업 방식으로

위탁사업을 추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.

□ 특히, 올해 초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(‘24.2.)

개정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

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공유재산을 무상으로

대부, 사용·수익 및 수익계약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

조례 개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

□ 상단의 상위법 개정을 토대로,

서울시 체육회 등의 시설 운영 시 대부 및 수의계약 등
위탁 등의 근거 조항이 마련된 바,
향후 이를 근거로 보다 시민 중심의 질적인 체육진흥 향상을
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□ 이에 안 제18조의2의 경우,
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,
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
수의계약 등으로 위탁할 수 있는 별도 조항을
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